

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1. 10, 10
- 나. 제출자 : 사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1. 10, 10(의안 제38호)
- 라. 심사일자 : 제59회사천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(2001.10.22)

2. 제안이유

행정규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일부 완화·개정하여 행정규제를 해소함은 물론 주민 편익을 증진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감사의뢰인이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를 납부토록 한 규정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 삭제(안 제6조제3항).
- 나. 검사시험 의뢰후 검사시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 하도록 규정(안 제6조4항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.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작업의 차원에서 정비되어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감사의뢰인이 지불하는 검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와
- . 검사시험 의뢰후 검사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도 사전에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불합리한 부담행위를 삭제하는 등 근거 불분명한 규제 사항을 폐지하는 것으로
- .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,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 결과 :원안의결